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확대〉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7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1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확대〉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5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17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개 요	1
【한정애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한정애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김선교의원안】 (국가공무원법)	3
【김선교의원안】 (지방공무원법)	4
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7

I. 개 요

【한정애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한정애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김선교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1.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김선교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1.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Ⅱ.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정애의원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김선교의원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구분	현행	한정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생략)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② ----- ----- ----- ----- ----- ----- ----- ----- ----- --.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구분	현행	한정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1. ~ 3. (생략)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생략) ③~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 ----- ----- -----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구분	현행	한정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 가	전 체	8,093	8,372	9,154	9,971	11,491	12,573	14,181	13,709
	남 성 (비율)	1,528 (18.9%)	1,885 (22.5%)	2,652 (29.0%)	3,384 (33.9%)	4,483 (39.0%)	5,212 (41.5%)	6,524 (46.0%)	6,198 (45.2%)
	여 성 (비율)	6,565 (81.1%)	6,487 (77.5%)	6,502 (71.0%)	6,587 (66.1%)	7,008 (61.0%)	7,361 (58.5%)	7,657 (54.0%)	7,511 (54.8%)
지 방	전 체	8,458	8,671	10,167	12,114	14,167	16,603	17,234	16,384
	남 성 (비율)	900 (10.6%)	1,338 (15.4%)	1,974 (19.4%)	2,709 (22.4%)	2,928 (20.7%)	3,780 (22.8%)	4,334 (25.1%)	3,873 (23.6%)
	여 성 (비율)	7,558 (89.4%)	7,333 (84.6%)	8,193 (80.6%)	9,405 (77.6%)	11,239 (79.3%)	12,823 (77.2%)	12,900 (74.9%)	12,511 (76.4%)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개정안들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하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히 한정애의원안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가정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현행 공무원과 같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적정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제도>

구분	공무원	민간근로자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11.5. 국가공무원법 개정)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14.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출생 후에는 2회로 제한
수당 (급여)	월봉급액의 80%, 최초 1년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첫 6개월 월봉급액의 100% 지급 (상한 200-450만원), 7개월째 부터는 80% 지급(상한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450만원), 7개월째 부터는 80% 지급(상한 150만원)
유사 제도	가족돌봄휴직 최대 3년(회당 1년 이내) *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료: 인사혁신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ECD 국가 민간 육아휴직제도 현황>

국가	자녀연령한(세)	휴직기간
호주	2	52주 (모성휴가와 통합 운영)
오스트리아	2	12개월(소득비례급여)
벨기에	12	부모 1인, 자녀 1인당 4개월씩
캐나다	1 (1.5세까지 연장 가능)	연방정부 기준 35주
체코	3	자녀 3세 생일까지
덴마크		32주
핀란드	3	158일(약 26주)
프랑스	3	첫 번째 휴직 최대 1년, 자녀수에 따라 연장 (자녀1명: 2회 연장, 자녀 3세 생일까지 / 자녀2명: 2회 연장, 유치원 입학일까지 / 자녀3명: 5회 연장, 자녀 6세 생일까지)
독일	8	3년
그리스	8	4개월
아이슬랜드	2	12개월(6개월 엄마(이때 모성휴가로 사용), 6개월 아빠 사용)
아일랜드	12	26주
이탈리아	12	6개월(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10개월 넘지 못함)
일본	1	자녀 연령 12개월까지(부모 모두 사용하면 14개월까지 연장)
한국	8	12개월
룩셈부르크	5	4-6개월
네덜란드	8	주간근로시간의 26배(약 988시간, 26주, 6개월)
뉴질랜드	1	12개월
노르웨이	3	49-59주(18주는 엄마, 15주는 아빠가 사용, 남은 16-18주는 공동 사용, 모성휴가와 통합운영)
폴란드	6	32주
포르투갈	6	최초육아휴직: :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시 20-150일, 부모 모두 사용시 150-180일 사용 가능

국가	자녀연령한(세)	휴직기간
		추가육아휴직: 3개월
스페인	3	자녀 3세까지 - 1년까지 고용보장 휴직 사용 가능(1년 이후 취업 분야에 따라 고용보장 조건 상이함)
스웨덴	12	480일(90일은 부모 각각 사용, 모성휴가 포함)
영국	18	50주(모성휴가 52주 중 의무모성휴가기간 2주 제외)
미국	(12개월) ¹⁾	12주(모성휴가와 통합)

주: 1) 연방가족의료휴가법(federal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서는 출산, 12개월 영유아 돌봄, 아픈 자녀와 가족 돌봄, 근로자 자신의 질병 사유로 이용하는 무급휴가로 내용상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23.12., p. 87., 각주 40)].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23.12., pp. 50~54.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83호)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한정애의원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한정애의원안
<u>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⑥ (생략)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근로자가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또는 질병(「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⑥ (생략)

아울러,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일반 휴직보다 추가 확대하려는 한정애의원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³⁾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⁴⁾에서 규정하는 조부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돌봄휴직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족돌봄휴직 제도>

구분	공무원	민간근로자
대상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보기 위한 경우
기간	회당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최대 3년)	연간 최장 90일(매년 사용 가능)
분할 사용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단, 회당 30일 이상
수당(급여)	무급	무급(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시 유급 가능)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 •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초저출생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과

넘을 수 없다.

4)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정한다.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휴직 외에 육아시간 등 직무와 병행 가능한 수단의 활성화,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질병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추가 확대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23년 합계출산율 0.72명 대비 공무원 출산율이 1.81명인 점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 여건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되나,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육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행 규정상 가족돌봄휴직과의 중복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